

제293회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임시회
도시·교통위원회 제5차 회의
【2023. 2. 7.(화) 10:00】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서울특별시 강서구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서울특별시 강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2023년 2월 7일
전문위원 배 금 택

1. 회부경위

- 가. 의안번호: 2023 - 8
- 나. 제 출 자: 강서구청장
- 다. 제출일자: 2023년 1월 17일
- 라. 회부일자: 2023년 1월 20일

2. 제안이유

- 강서구민이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방범 시설물 설치를 지원하고,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사업 추진 시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고자 이 조례를 개정함.

3. 주요내용

- 가. 구민의 안전을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제1항)

나. 방범시설의 설치 비용 지원 시,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시설의 경우 재난이나 화재가 발생할 경우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한 시설이어야 함을 명시 (안 제9조 제2항)

다.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추진 시 서울강서경찰서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이 연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 (안 제11조 제2항)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제28조, 「건축법」 제53조의 2,
「서울특별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

나. 예산조치: 필요시 반영

다. 합 의: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1) 입법예고(2022. 12. 7.~12. 27.) 결과: 의견 없음

2) 규제심사(기획예산과): 해당 없음

3) 부패영향평가(감사담당관): 원안 동의

4) 성별영향평가(가족정책과): 원안 동의

5. 검토의견

가. 개정 취지

- 침입을 예방하기 위한 방범시설 등의 설치를 지원하여,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제출된 것임.

나. 주요 개정내용

- 방범시설¹⁾등의 설치 지원 사항 신설(안 제9조)
 - 구청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음.
 - 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²⁾의 경우, 재난 또는 화재 발생 시 실내에서 외부 탈출이 용이하도록 제작된 것이어야 함을 규정하여 비상 시,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
- 서울강서경찰서 범죄예방 진단 및 분석에 관한 사항³⁾이 연계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규정(안 제11조 제2항)
 - 구청장은 관할 경찰서와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하고, 범죄 예방 진단 및 분석 정보를 활용하여 지역적 특성에 적합한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함을 명시함.

1) 방범시설: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미리 막는 시설

(직접)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경보장치 등

(간접) 조명, CCTV, 반사경, 범죄예방디자인 적용구간 안내 등 정보제공사인 등

2) 출입차단 방범시설 : 방범문, 방범창, 방범용 망창, 방범용 창살, 창호용 잠금장치 등 허가받지 않은 사람의 범죄목표물에 대한 접근을 통제하는 시설

3) 지역별 범죄분석자료(범죄분포표, 범죄발생율 등)

다. 종합 의견

- 2021년 경찰청 범죄통계에 따르면, 강력·절도·폭력범죄의 발생 장소는 전체 421,546건 중 노상(131,004건,31.1%)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였으며 아파트·연립다세대(63,735건,15.1%), 단독주택(35,588건,8.4%)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참고자료

< '21년 강력·절도·폭력범죄 발생장소 순위 > (단위: 건,%)

구분	전체	①노상	②아파트, 연립다세대	③단독주택	④유형 접객업소	⑤주차장	...
건수	421,546	131,004	63,735	35,588	26,096	21,306	...
비율		31.1	15.1	8.4	6.2	5.1	...

※ '붙임' 자료 참고

- 본 개정조례안은 방범시설 설치 지원 등을 통해 건축물 및 도시 공간의 범죄 위험요소를 줄이고자 제출된 안으로, 관련법령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다만 방범시설 설치를 지원함에 있어, 침입범죄에 취약한 대상에게 한정된 예산이 효율적으로 지원될 수 있도록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시행되어야 할 것임.

참고1

범죄 발생장소 관련 자료 (2021년)

[자료출처: 경찰청 범죄통계]

죄종별(1)	죄종별(2)	계	아파트, 연립다세대	단독주택	고속도로	노상	백화점	슈퍼마켓	편의점	대형 할인매장	상점	시장 노점	숙박업소 목욕탕	유흥 접객업소	사무실	공장	공사장 광산
	계	421,546	63,735	35,588	499	131,004	2,290	10,860	8,487	3,513	18,650	6,559	10,782	26,096	8,949	2,342	2,353
강력범죄	소계	22,476	4,212	2,707	21	3,170	23	132	273	17	477	197	2,810	2,157	721	91	23
	살인기수	270	92	57	1	43	-	-	-	-	-	-	19	5	5	3	2
	살인미수등	388	116	67	1	87	-	3	3	-	3	1	11	28	11	2	3
	강도	495	78	47	1	114	2	10	39	3	32	3	47	27	15	2	-
	강간	5,263	1,561	976	2	127	-	-	1	-	33	15	1,692	158	41	2	1
	유사강간	814	247	147	-	36	-	-	2	-	10	6	170	38	9	1	-
	강제추행	13,962	1,761	1,096	16	2,602	21	117	226	14	378	153	803	1,865	608	64	11
	기타 강간 등	238	78	71	-	8	-	1	1	-	2	1	28	8	1	-	-
	방화	1,046	279	246	-	153	-	1	1	-	19	18	40	28	31	17	6
절도범죄	소계	166,409	16,482	8,535	99	46,374	2,142	9,920	6,143	3,350	15,031	3,970	2,666	7,116	2,282	972	1,205
폭력범죄	소계	232,661	43,041	24,346	379	81,460	125	808	2,071	146	3,142	2,392	5,306	16,823	5,946	1,279	1,125
	상해	28,453	4,876	3,014	50	9,761	18	90	157	15	347	290	696	3,378	1,049	336	228
	폭행	115,942	23,656	12,716	206	41,284	77	526	1,365	81	1,506	1,071	1,903	9,270	2,946	657	565
	체포·감금	1,165	259	141	6	209	-	1	5	1	14	2	103	51	59	4	3
	협박	21,058	5,052	3,338	90	6,111	9	54	208	10	281	154	195	1,134	693	68	52
	약취·유인	240	50	17	-	112	-	1	1	-	-	1	10	1	4	-	-
	폭력행위등	6,484	648	351	3	2,869	4	12	35	1	62	87	199	644	201	53	55
	공갈	5,131	356	317	4	554	-	6	32	7	57	31	43	129	259	9	14
	손괴	54,188	8,144	4,452	20	20,560	17	118	268	31	875	756	2,157	2,216	735	152	208

죄종별(1)	죄종별(2)	창고	역 대합실	지하철	기타교통 수단내	홍행장	유원지	학교	금융기관	의료기관	종교기관	산야	해상	부대	구금장소	공지	주차장	공중 화장실	PC방	기타
	계	1,443	2,533	1,490	7,742	639	3,572	2,506	3,119	3,494	955	5,541	201	78	63	99	21,306	1,224	1,837	31,997
강력범죄	소계	29	328	605	1,093	95	244	286	13	438	52	64	8	13	8	3	188	134	38	1,806
	살인기수	-	-	-	7	-	1	-	-	10	-	2	1	-	-	-	2	-	1	19
	살인미수등	-	1	-	1	-	1	1	-	9	1	2	-	-	-	-	7	1	-	28
	강도	1	2	-	8	-	3	1	2	3	1	4	-	-	-	-	10	3	1	36
	강간	5	1	-	136	2	17	16	-	15	8	8	-	1	-	1	20	43	4	377
	유사강간	1	-	-	32	-	10	8	-	12	2	1	-	-	1	-	11	9	1	60
	강제추행	10	321	604	904	93	191	251	10	376	31	30	2	12	7	2	98	66	31	1,188
	기타 강간 등	-	-	-	3	-	1	2	-	1	1	2	-	-	-	-	4	3	-	22
	방화	12	3	1	2	-	20	7	1	12	8	15	5	-	-	-	36	9	-	76
절도범죄	소계	1,179	1,100	435	2,840	364	1,493	1,026	2,881	1,139	440	3,514	71	9	3	56	9,891	727	1,253	11,701
폭력범죄	소계	235	1,105	450	3,809	180	1,835	1,194	225	1,917	463	1,963	122	56	52	40	11,227	363	546	18,490
	상해	40	120	37	204	26	303	287	12	330	60	147	23	8	8	4	626	34	67	1,812
	폭행	92	796	376	3,090	97	1,089	516	72	1,239	172	241	54	36	31	8	2,850	160	294	6,900
	체포·감금	-	3	-	139	-	3	3	1	28	5	5	-	-	-	-	13	-	4	103
	협박	9	30	6	117	17	101	90	17	133	32	75	10	1	9	3	265	5	25	2,664
	약취·유인	-	-	1	3	-	2	7	2	1	2	-	-	-	-	-	3	1	-	21
	폭력행위등	6	20	4	36	7	122	145	5	43	38	38	3	5	1	1	199	28	20	539
	공갈	3	5	1	30	1	24	42	18	22	7	4	1	6	2	1	17	1	26	3,102
	손괴	85	131	25	190	32	191	104	98	121	147	1,453	31	-	1	23	7,254	134	110	3,349

참고2

서울시 및 타 자치구 조례 개정 현황

- 방법시설 지원 근거 포함 개정 자치구: 10개(서울시 포함)
- 범죄예방 분석자료 활용 근거 포함 개정 자치구: 7개

자치구	조례명	방법시설 설치 지원 조항 포함	경찰서 범죄예방 분석자료 활용 조항 포함	시행일
서울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X	2021.12.30.
강남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	2018.12.14.
금천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 (2017.5.15.)	2021.11.16.
마포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	2021.12.30.
은평구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	○	X	2018.11.29.
성북구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조례	○	X	2021.07.15.
구로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X	2021.09.30.
도봉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에 관한 조례	○	X	2022.05.06.
송파구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	X	2022.11.03.
동대문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	X	2022.12.29.
서대문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디자인 조례	X	○	2017.06.07.
영등포구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X	○	2020.11.05.
성동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X	○	2021.03.15.
중구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X	○	2021.12.29.

□ 지방자치법

제28조(조례)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 건축법

제53조의2(건축물의 범죄예방)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범죄를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 예방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은 제1항의 범죄예방 기준에 따라 건축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범죄예방을 위한 도시환경디자인 조례

제9조(방범시설 등 설치 지원) ① 시장은 방범시설 등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4.28>

② 제1항에 따라 방범시설(출입을 차단하기 위한 방범시설의 설치에 한정한다)의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그 방범시설은 재난 또는 화재가 발생할 경우 실내에서 외부로 탈출하기 용이하도록 제작된 방범시설이어야 한다. <신설 2022.4.28>